경인지방우정청공고 제2022 - 99호

2022년 제1회 우정9급(집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최종합격자 명단 공고

경인지방우정청 시행 2022년도 제1회 우정9급(집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최종합격자 명단

가. 합격 인원 : 112명 (일반 111, 보훈 1)

나. 합격자 명단 *모집구분단위 우체국 편제 및 응시번호 순 게재

모집구분	모집단위	합격인원	합격자 응시번호
일반	인천	4	인천101, 인천103, 인천105, 인천106
	서인천	5	서인천101, 서인천102, 서인천103, 서인천107, 서인천109
	인천계양	2	인천계양102, 인천계양103
	남인천	2	남인천103, 남인천104
	인천남동	8	인천남동101, 인천남동104, 인천남동106, 인천남동107, 인천남동108, 인천남동110, 인천남동111, 인천남동112
	부평	1	부평101
	의정부	6	의정부101, 의정부102, 의정부103, 의정부104, 의정부106, 의정부108
	수원	4	수원102, 수원103, 수원104, 수원105
	서수원	4	서수원102, 서수원103, 서수원105, 서수원106
	군포	1	군포101
	안양	3	안양102, 안양103, 안양107
	성남분당	3	성남분당101, 성남분당102, 성남분당105

모집 구분	모집 단위	합격 인원	합격자 응시번호
일반	부천	3	부천103, 부천108, 부천109
	안산	3	안산101, 안산102, 안산103
	고양일산	3	고양일산101, 고양일산102, 고양일산103
	고양덕양	3	고양덕양101, 고양덕양102, 고양덕양103
	시흥	6	시흥102, 시흥103, 시흥104, 시흥106, 시흥107, 시흥108
	용인수지	7	용인수지101, 용인수지102, 용인수지103, 용인수지105, 용인수지106, 용인수지107, 용인수지108
	용인	2	용인101, 용인102
	남양주	6	남양주102, 남양주104, 남양주107, 남양주109, 남양주110, 남양주112
	평택	4	평택101, 평택102, 평택103, 평택104
	화성동탄	7	화성동탄101, 화성동탄102, 화성동탄103, 화성동탄104, 화성동탄105 화성동탄106, 화성동탄107
	화성	5	화성101, 화성102, 화성103, 화성104, 화성105
	파주	3	파주101, 파주102, 파주103
	김포	7	김포101, 김포102, 김포103, 김포104, 김포105, 김포106, 김포107
	이천	3	이천101, 이천102, 이천104
	안성	2	안성103, 안성104
	경기광주	2	경기광주101, 경기광주102
	구리	1	구리101
	여주	1	여주101
보훈	고양덕양	1	고양덕양701

2. 제출해야 하는 임용관계서류

○ 추후 모집단위 우체국에서 제출일정 별도 통보

임용 시 제출하여야 할 임용관계서류

① 기본증명서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주민등록번호가 뒷번호까지 모두 기재된 것
③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군 병적사항 기재된 것) → 호봉산정시 참고
※ 주민등록번호가 뒷번호까지 모두 기재된 것, 주소이력 전체 기재된 것
④ 최종학교졸업(재학·휴학·재적)증명서 1부
※ 졸업증서 사본이나 검정고시합격증 사본도 가능함
⑤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1부 : 붙임 참조
※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까지 모두 기재
⑥ 우체국 통장사본 1부
⑦ 경력증명서 1통(해당할 경우)
※ 공무원 경력 및 호봉 산정 시 필요
⑧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할 경우)
⑨ 증명사진(반명함판) 3매
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3. 임용시기

○ 채용후보자(최종합격자)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 예정

- 교육기간 : 2022. 2. 21. ~ 2. 25.(5일)

※ 채용후보자는 2.16.(수)에 교육일정, 회원가입방법 등 개별 문자발송

- 교육방법 : 온라인(쌍방향)교육*

※ 온라인(쌍방향)교육은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진행되며, 강의시간이 정해져 있음

○ 임용시기는 모집단위 우체국별로 개별 통보

- 우체국별 결원발생 상황에 따라 임용시기가 다를 수 있음.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 5.>

(앞쪽)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구 분	② 시험실시기관	③ 응시직명	④ 응시번호	⑤ 성 명		사 진 (3.5㎝ × 4.5㎝) ※ 압인 또는 계인
⑥ 검사 시						
⑦ 재사용				⑧ 주민등록번호		

검 사 내 용

키		cm	체 중		kg
허리둘레		cm	혈 압		
(교정)시력	좌: ( ) 우: (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좌: ( ) 우: ( )
종 양 질 환			이비인후질환		
호 흡 기 질 환			심 혈 관 질 환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신장/비뇨기계질환		
내 분 비 질 환			혈 액 질 환		
신 경 질 환			피 부 질 환		
근골격계 질환			안 질 환		
정 신 질 환			흉부X선 검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합격 여부	[ ]합 격 [ ]판 정 보 류	합격 사유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

210㎜×297㎜[백상지(80g/㎡)]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경인지방우정청)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우정9급공무원)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 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함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함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산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 라고 적습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 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에 해당하지 않음
   -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예시: '만성골수성백혈병' 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사지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8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경인지방우정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공무원임용 결격사유 조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관련)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결격사유 유무 조회**		
2	**범죄경력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_____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인이 어려워 공무원 임용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